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9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정준호·이춘석·임호선

김태선・조승래・정성호

박용갑 • 윤후덕 • 손명수

전용기 · 이학영 · 김남희

양부남 • 박균택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·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.

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 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.

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 을 우려가 있음.

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

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3 중 "따돌림과"를 "따돌림,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 물의 제작·반포와"로 한다.

제16조의4제1항 중 "편집물,"을 "편집물, 합성물, 가공물,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 | | |
|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| | | | |
| 같다. | | | | |
| 1. • 1의2. (생 략) |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1의3. "사이버폭력"이란 정보통 | 1의3 | | | |
| 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| | | | |
|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| | | | |
| 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| | | | |
| 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| | | | |
|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<u>따돌</u> | | | | |
| <u>림과</u> 그 밖에 신체·정신 또 | 림,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| | | |
|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|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| | | |
| 행위를 말한다. | •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• | | | |
| | 영상물·음성물의 제작·반포 | | | |
| | 와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2. ~ 5. (생 략) | 2. ~ 5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| 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| | | |
| 지원)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| 지원) ① | | | |
| 해당하는 촬영물, 음성물, 복제 | | | | |
| 물, <u>편집물,</u> 개인정보, 허위사실 | <u>편</u> 집물, 합성물, 가공물 <u>,</u> - | | | |
| 등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 | | | | |

| 이라 | 한다) | 이 정보 | 보통신 | ·] 망여 | ∄ 유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
| 포되어 |] 피청 | 해(촬영 | 물등 | 의 | 대상 |
| 자가 | 되어 | 입은 | 피하 | 를 | 말한 |
| 다)를 | 입은 | 학생 | 에 디 | 하여 |] 촬 |
| 영물등 | 의 스 | ∤ 제를 | 위한 | <u></u> 지 | 원을 |
| 할 수 | 있다. | | | | |

② ~ ⑤ (생 략)

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|